

# 公職選舉及選舉不正防止法改正意見

2000. 1. 26

中央選舉管理委員會

#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와 보궐선거등의 분리실시에 관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개정의견

## I. 개정의견 주요내용

지역구국회의원·지방의원·지방자치단체장의 보궐선거등을 4월·10월의 마지막 목요일을 선거일로 하여 년 2회 동시 실시하도록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합의되었는 바, 이 경우 보궐선거등의 선거일이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기간개시일전 40일부터 선거일후 50일 사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부터 50일후 첫번째 목요일에 동시 실시하도록 함(의견 제203조제3항 관련).

## II.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와 보궐선거등의 분리실시의 필요성

### 1. 선거 성격의 차이

국회의원선거와 지방의회의원·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는 그 선출직의 지위·역할이나 선택기준에 차이가 있을 것이므로 이를 동시 실시하는 경우에는 유권자들의 후보자 선택에 있어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.

### 2. 업무량의 과다

과거 재·보궐선거는 년중 분산 실시됨으로써 업무부담이 적었으나,

년 2회 실시하게 되므로 많은 재·보궐선거가 동시에 집중적으로 실시되어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와 같이 실시할 경우 업무부담이 과중되고, 특히 금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16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137개 지방선거의 재·보궐선거가 예상되어 선거사무관리의 차질이 우려됨.